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할 때의 전자서명수단을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기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하는 인증서로 특정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2021. 6. 10. 시행 예정)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대한민국 정부24(www.gov.kr)의 민원서비스시스템을 통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기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말한다)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

3.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것을” 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인터넷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 별 증명서 청구) 신청인이 대한민 국 정부24(www.gov.kr)의 민원서 비스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각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 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 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u>것을</u> 말한다)에 의하여 본 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인 본인 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제외한다)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 에는 신청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우편에 의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9조 (인터넷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 별 증명서 청구) ----- ----- ----- ----- ----- ----- <u>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u> <u>지정하여 전자가족등록시스템에 공</u> <u>고한 인증서를</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